##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61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 김문수·김남근·박지원

서미화・김 윤・이광희

이수진 • 허성무 • 김우영

이재강 · 조계원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 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 하고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음.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9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전국 평균은 20명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편차가 크고 도시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을 유 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기준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습 권을 보장하고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기준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
	런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
	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지
	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
	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u>야 한다.</u>